

재 정 : 2000. 3. 20  
 1차개정 : 2004. 2. 13  
 2차개정 : 2008. 1. 4  
 3차개정 : 2012. 1. 26  
 4차개정 : 2020. 3. 9  
 5차개정 : 2022. 2. 28

##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제 1 조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① 초·중등 교육법 제 31조 1항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63조에 의함  
 ② 학교법인의 정관 제 95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 설치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 제 2 조 (목적)**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교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본교 설립 이념 및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이며, 심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 제 3 조 (성격)** ① 법정 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며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심의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의결, 자문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있어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단위학교의 자율성 : 사학의 특성과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제정, 자율적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에 일조한다.
- 제 4 조 (구성)** ① 명칭 : 계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② 인원 : 최소 9명 최대 12명의 위원을 둔다. (초·중등 교육법 제 31조 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8조 제 1항)  
 ③ 구성비율 : 학부모 위원 (40~50%) 4명, 교원위원(30~40%) 3명, 지역위원 (10~20%) 2명으로 한다.
- 제 5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고,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장 1명이다.  
 ③ 지역 위원은 본교의 통학 구역내에 거주하는 인사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퇴직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 졸업생,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본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 6 조 (위원의 자격 상실)** ①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단, 졸업시 학년도말까지 자격을 유지함)  
 ③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④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⑥ 회기중 위원의 사직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수리,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한다.

**제 7 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는 임기가 끝나고 차기 선거에서 선출되었을 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9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명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조례 제 8조 3항)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 59조 제 5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 시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 선출 시기는 임기 만료 10일전에 하고, 지역위원 선출 시기는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선출은 직접선출로 한다. 부재자 투표용지 및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상자료 유인물은 1일전 가정예 보내 홍보한다.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를 추천하여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① 학부모선출관리 위원은 각 학년에 1명씩(총6명) 학부모 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단, 선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② 선출 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관리, 후보자 등록업무, 선거홍보 및 투개표의 관리 업무를 한다.

③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는 5인(교사4명, 서무직 1명)으로 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의 완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_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⑥ 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로 한다.

**제 12 조 (선거 공고)**① 선거 공고의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기능, 선출에 관한 세칙(일시, 장소, 인원, 방법, 자격, 후보 등록 사항, 선거인 명부, 열람 사항, 당선에 관한 방법)을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인터넷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② 선거 공고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 13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천재지변 외에는 교내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다수 득표순으로 당선을 정하며, 입후보자가 정원이하일 때라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고, 당선자가 선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 신상에 관한 기록문서 및 선거 공보물을 학부

모에게 배부해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전 학교발전 구상, 소견발표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후보들의 명부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 개표 순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⑥ 투표인수 2/3 이상 참석으로 하고, 단기명으로 하며, 다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⑦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 단,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⑧ 선거결과를 가정 통신문,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한다.

**제 14 조 (교원 위원 선출)** ①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위원 정수의 2배수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에 투표한다. 단, 입후보자가 2배수 미만일 때는 의견을 물어 생략할 수 있다.

⑤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 단,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⑥ 선거결과를 가정 통신문, 인터넷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한다.

⑦ 교직원 범위는 재단 정관에 의해 임명된 교원, 사무직원, 기능직을 포함한다.

⑧ 교원을 제외하고는 피선거권은 없다.

**제 15 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 제 4항)

② 당 해 년도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관리위원회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 후보자 수는 가능한 한 정수의 2배수 이상이 되도록 추천을 받는다.

**제 16 조 (재·보궐 선거)** ① 운영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재선거를 실시할 때는 피선거권 제한시, 선거권 제한시, 위원선거 공고 미실시 시, 불공정한 선거관리시, 규정 제정의 하자시이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 17 조 (회의 및 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처리한다.

③ 회의는 연 8회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일 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③항)

④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⑤ 회의개최는 일과후 또는 주말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한다.

**제 18 조 (소위원회 설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② 위원장 및 학교장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자를 초빙 의견을 타진하고 그 안건에 따른 심의를 한다.

③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고하고 심의를 받는다.

④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 19 조 (간사, 교감 등)** ① 간사는 학교장이 행정실장을 위촉하고 회의 기록, 회의록 낭독, 출석 확인을 하며, 발언권을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 의결권, 피선거권은 없다.  
③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장이 협조한다.  
④ 교감은 위원임기가 아니더라도 학운위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제반사항을 조연하며 발언 및 투표권을 갖는다.

**제 20 조 (서면 제출 및 설명회)**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요구할 수 있고, 학교장의 승인으로 서면 제출에 응할 수 있다.  
② 설명회는 당해 교직원 중 업무 담당자가 위원장의 요청과 학교장의 승인 하에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사항을 설명 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위원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한다.

**제 22 조 (심의 사항 등) - (초 중등 교육법 제 58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항은 제외)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3.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에 관한 사항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운영 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초 중등교육법 제 32조)
- ③ 제 1항 7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는 제 22조 각 항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때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심의결과와 시정 등)**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법령, 조례, 규칙,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정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 25 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는 이를 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안건 상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를 시정 및 개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학생대표에게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④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제 26 조 (의안의 제출 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②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27 조 (규정의 개정)** ① 초·중등 교육법 제 58조 ~ 64조에 명시 되지 않은 학교 규정 중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의 규정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③ 개정안은 7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 방법은 선거 절차 공고와 동일하게 한다.  
④ 효력 발생은 공고일부터 한다.

### 제 3 장 학교 자생적 단체와의 관계

**제 28 조 (학교내 자생적 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이 외에 다음의 직능별 자생적 단체를 둘 수 있으며, 자생적 단체의 업무와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별도 독립단체로 한다.

- 본교의 자생적 단체로 다음을 둘 수 있다.
  - ㉠ 총동창회 (본교 졸업생으로 구성)
  - ㉡ 교원 친목회 (체육 문화활동 등)
  - ㉢ 학부모 대표회 (학교의 행사에 협조)
  - ㉣ 풍물부 어머니회(풍물부원 어머니로 구성)
  - ㉤ 관현악부 어머니회(관현악부원 어머니로 구성)

**제 29 조 (운영경비)** ①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본교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부 칙

- ① 시행일 :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 법 제 31조 제 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 ③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대통령령 64조 부칙)
- ④ 최초로 구성하는 학운위 조직시기는 가톨릭 법인 정관이 확정됨과 동시에 학교장이 필요한 일정을 지정하여 적용 시행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 선출시 긴급을 요할 시는 선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 ⑥ 제 10조 ②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선출은 직접선출로 한다. 부재자 투표용지 및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상자료 유인물은 1인전 가정에 보내 홍보한다. (04. 2. 13개정)
- ⑦ 제 19조 ④ 교감은 위원임기가 아니더라도 학운위 회의에 참석 회의 제반사항을 조언 발언 투표권을 갖는다. (04. 2. 13 개정)
- ⑧ 제 2조 “사학의 특성 육성을 위한 ” 문구 삭제 (중복 기술) (08. 1. 4)

- ⑨ 제 19조 ① 서무부장을 행정실장으로 수정 (08. 1. 4)
- ⑩ 제 24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시정 하여야 한다 에서 “이를” 문구 삽입 (08. 1. 4)
- ⑪ 제 6조 ② “졸업시 학년도말까지 자격 유지함”. 문구 삽입(12. 1. 26개정)  
 제 6조 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제 6조 ⑥ “회기중 위원의 사직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수리,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한다.” 문장 삽입 (12. 1. 26 개정)
- ⑫ 제 11조 ③ “2인”을 “5인”으로, “교사 1명”을 “교사 4명”으로 문구 수정(12. 1. 26 개정)  
 제 11조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제 11조 “⑥ 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로 한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 ⑬ 제 13조 ②, ③ “학부모”를 “학부모위원”으로, ② “학급대표”를 “학부모”로 문구 수정(12. 1. 26 개정)
- ⑭ 제 14조 ① “교원위원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문구 삽입(12. 1. 26 개정)
- ⑮ 제 15조 “③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선출관리위원회 지역위원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④ 지역위원 후보자 수는 가능한 한 정수의 2배수 이상이 되도록 추천을 받는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 ⑯ 제 16조 “재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로 문구 수정(12. 1. 26 개정)  
 제 16조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 ⑰ 제 17조 ③ “10일”을 “20일”로, ④ “20일”을 “15일”로 수정(12. 1. 26 개정)  
 제 17조 ⑤ “회의개최는 일과후 또는 주말에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최한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 ⑱ 제 18조 ① “단,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둔다” 문장 삽입(12. 1. 5 개정) ④ “기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 ⑲ 제 21조 “회의록 작성”에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문구 수정(12. 1. 26 개정)  
 제 21조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위원 등.”으로 문장 수정 (12. 1. 26 개정)  
 제 21조 ③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한다”로 문장 수정(12. 1. 26 개정)
- ⑳ 제 22조 “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에 관한 사항. ⑮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 운영에 관한 사항” 문장 삽입(12. 1. 26 개정)
- ㉑ 제 25조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자문)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학생대표에게 제안하게 할 수 있다.”는 문장 삽입(12. 1. 26 개정)  
 “④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문장 삽입(12. 1. 26 개정)
- ㉒ 제 28조 “㉠어머니교실, ㉡명예교사회, ㉢청소년후원단체” 문장 삭제 ”㉣ 관현악부 어머니회“ 문장 삽입(12. 1.26 개정)  
 제 28조 “㉤ 학부모회”를 “학부모 대표회“ 로 문구 수정(12. 1. 26 개정)
- ㉓ 제 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제 5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로 개정(20. 3. 9 개정)
- ㉔ 제 2조 ‘자문’을 ‘심의’로 수정, 제 3조 ① ② ‘자문’을 ‘심의’로 수정, 제 18조 ③ ‘자문’을 ‘심의’로 수정, 제 22조(자문 사항 등) 및 ① ‘자문’을 ‘심의’로 수정, 제 23조 ① ② ③ ‘자문’을 ‘심의’로 수정, 제 24조(자문결과외의 시정 등) ‘자문’을 ‘심의’로 수정, 제 25조 ① ② ③ ‘자문’을 ‘심의’로 수정(2022. 2. 28)